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및 ‘성비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포상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성비위 및 성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개선·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4조 제2항제13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 성비위 징계 기준 체계화 및 징계양정 강화(안 제2조제1항 일부개정, 별표 1의4 신설)

1)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현행 징계기준(별표 1)에서 별도 징계기준(별표 1의4)으로 분리

2)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최소 양정기준 강화

3)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비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비위를 구분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최소 양정기준 강화

다. 성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5. 24. ~ 7. 5.)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음주운전”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비위 사건 징계 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으로, “별표 1의5”를 “별표 1의6”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별표 1 제1호타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타목 및 제1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실 의무 위반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1 제7호가목 내지 제7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마목을 제7호나목으로 한다.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4와 같음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1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7호마목”을 “제7호나목”으로, “별표 1의4”를 “별표 1의5”로 한다.

※ 비고
3. 제1호타목에서 “추가적인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 2차 피해 유형을 말한다.(2차 피해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2차 피해가 성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비위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4.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재물·재산상 이익을 포함한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실제 이익을 취득한 행위와 제3자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실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7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5

와 같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를 각각 별표 1의5 및 별표 1의6으로 하고,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4]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비위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 도가 약하 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폭력범죄의 처 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에 따 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 력범죄	과면	과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2. 「성폭력범죄의 처 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에 따 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과면	과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3. 「성폭력범죄의 처 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에 따 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성폭력범죄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4. 「성폭력범죄의 처 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에 따 른 통신매체를 이 용한 음란행위 관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런 성폭력범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공연음란 관련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6. 1~5호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7.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8.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2호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뇌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담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5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 ----- ----- ----- ----- ----- ----- ----- ----- ----- ----- ----- ----- ----- ----- 정 폭력·성희롱·성매매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 별표 1의6-----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략)	제4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설>	13.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